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상호 의원 외 16명

2. 제안이유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본원칙,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등(안 제1조~제6조)
-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7조~제8조)
-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4조)
- 부문별 에너지 시책(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안 제15조~제18조)
-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안 제19조~제2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에너지법」 제4조, 제7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제25조, 제28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5. 검토의견

○ 배 경

- 기후위기는 환경·사회적 영향뿐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2020. 12. 7.)함에 따라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본 조례안은

-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각 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체계 구성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에너지 절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5조에서 안18조까지는 공공·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 부문별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공공부문에서만 강조되었던 에너지 절감 정책에서 다른 부문의 참여확대로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에너지 절약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공공부문의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 및 에너지 절약 상품의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에너지 절약 시책의 참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과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 사항 및 포상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 조항들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